

# 『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』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

- ❖ 창원시 의회 전홍표 의원 발의 예정인 『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』 관련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보고임.

## I 의원발의 조례안 개요

### 1. 조례안 발의 개요

- (조례안명)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
- (발 의 자) 전홍표 의원 (환경해양농림위원회)
- (제안이유)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6조)
- 관계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(안 제7조)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8조)

## II 검토내용

조례안	조례내용	검토결과	비고
제1조 ~ 제5조	○ 목적, 정의, 시장 등의 책무 ○ 고용촉진 대책 수립, 실태조사 등	별도 의견 없음	
제6조	○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-----	<검토의견> ○ 조례안 제6조(고용확대) 삭제함이 타당 -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고등학교 졸업자 포함 되어 있고, 창원시 공기업 신규채용시 부담완화	
제7조 ~ 제9조	○ 관계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 ○ 행정적·재정적 지원	별도 의견 없음	

### Ⅲ 종합 검토의견

→ 조례안 일부수정(제6조 삭제) 시행

- 본 조례안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을 근거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「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」이 제정될 경우
  -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청년 실업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자리창출 추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
  
- 『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』 제6조(고용확대)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제5조에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3 이상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하고 있고
  - 창원시 공기업 신규 채용시 부담 완화

#### ※ 관련법 및 타 지자체 우선채용률 비교표

관련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	우 선 채 용 률	비 고
경상남도	없음	2016.제정
울산광역시	없음(개정삭제)	2013.제정 2016.개정삭제

■ 의원발의 조례안 : 불임

■ 창원시 공공기관 정·현원 현황표 : 불임

■ 관계법령 : 불임
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제3조
- 「초·중등 교육법」제2조
- 「초·중등 교육법 시행령」제98조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
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: 불임. 끝.